

제221회 정례회
2003.12.18(목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전문위원 임석 규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- 2003년 11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
 - 충청북도 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
 -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안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, 사용료를 별표로 하여 동 조례에 삽입하고, 기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의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.
- 주요골자로는
 - 직속기관 및 지역소속의 도서관과 학생회관, 수련원 및 야영장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로 정하고, 아울러 그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며(안 제11조, 제26조, 제32조, 제33조)
 -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삽입하는 내용 등입니다.(안 제33조의2, 제33조의3)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 시설사용료를 별표로 하여 본문의 내용에 삽입하고 기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규정을 신설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.

○ 그러나 동 조례의 내용중

- 기존의 지역 교육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행하던 시·군교육장 관할 도서관, 학생회관,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승인 사항을 금번 개정조례의 부칙 제3항에서 다시 삭제하여 시행하는 사유와
※ 충청북도교육청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7조 별표1

- 아울러 최근 지방분권의 방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부단위 기관에게 그 사무를 대폭 위임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흐름에 배치되지 않는가의 여부

-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동 조례의 제명 중 “이용”을 “사용”으로 하였는데

※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⇒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※ 시설사용료 개념(별첨)

- 본문의 내용과 별지제1호, 제2호, 제3호 서식의 내용에는 “이용”과 “사용”을 혼용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※ 안 제11조, 제11조의2제3항제2호, 제21조, 제32조, 제33조3항제2항제1호, 제2호, 부칙제2항

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